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적합하게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 국가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03. 7. 1자로 인상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 간 보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처우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개정(안 제2조제2호, 별표 2)
-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300,000원씩 인상
-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근무년수 별로 300,000원씩 일률적으로 인상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간의 보수형평성을 확보하고 처우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2조 제2호와 별표 2의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개정하자는 데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에서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상근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은 개정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계약직공무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가 개정된 것은 98년 10월이고 5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다시는 상위법령과 조례가 불일치 되는 괴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동 규정 별표 9의 제2호에서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본 조례에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인 의사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료업무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은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300,000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다.

현행 공무원인 의사의 보수수준은 민간병원 등에서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고 근무여건이 낙후된 환경 속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무원인 의사의 경우 보수, 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 등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직의 경우 '03. 7. 1자로 의료업무수당이 신설('86년)된 이래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던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처럼 열악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자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